투 표 지 보 관 ·폐 기

○ 구·시·군선관위는 투표지, 빈 회송용봉투, 투표관계서류 등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합니다.

○ 다만, 해당 선거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쟁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구·시·군선관위의 결정으로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○ 보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쟁송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, 쟁송의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Q.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

-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·후보자·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당선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Q. 선거·당선소송 제기 시 증거보전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

-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·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투표함·투표지·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